

## 2022년 국립마산병원 국가공무원(간호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마산병원에서 2022년도 국가공무원(간호직)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11월 1일  
국립마산병원장

### 1. 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임용예정 직급	채용예정 인원	직무분야	담당업무	임용예정기관	비고
간호서기 (8급)	2명	간호 (환자간호)	간호사 업무 전반 (환자간호, 간호단위 안전관리 및 감염관리, 환경관리 등)	국립마산병원 간호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대근무

※ 채용직급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거나 채용 예정 인원보다 적게 결정할 수 있음

### 2. 근거법령

-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 및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 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임용시험)
- 마.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 3. 응시 자격

#### 가. 공통사항(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2004. 12. 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 6. 13.>
- ② 삭제 <2008. 6. 13.>
  - ③ 삭제 <1998. 2. 24.>
  -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시 응시 가능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단,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자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노인 관련기관의 취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나. 우대사항(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료기관에서의 \*\*관련 근무경력

\*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또는 종합병원

\*\* 관련 근무경력: 「의료법」 제2조(의료인)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이며, 정규직의 근무경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근무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함.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함

### ○ 전문간호사 자격증 총 13분야 중 4분야만 인정

- 국가자격증(보건복지부): 중환자전문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임상전문간호사, \*감염관리전문간호사

\* 감염관리간호사 자격증의 경우 민간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감염관리실무전문가자격증)도 인정

- 전문간호사 자격증 2개 이상 소지하여도 1개만 인정

-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4. 시험방법 등

### 가. 제1차 서류전형

#### ○ 응시인원이 6명 미만(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여 적격자 선발

#### ○ 응시인원이 6명 이상(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 응시자가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 순으로 3배수 선발

※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 \* 서류전형 심사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우대사항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나. 제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발생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5. 시험일정

단 계	주요내용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2. 11. 1.(화) ~ 11.(금)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질병관리청 및 국립마산병원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22. 11. 9.(수) ~ 11.(금)	등기우편 또는 직접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2022. 11. 28.(월)	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예정)	2022. 12. 7.(수)	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 게재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2023. 1. 4.(목)	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6.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2022. 11. 9.(수) ~ 11.(금)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 주소: (우)5175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인사담당 (겉봉투에 “간호직 응시원서 재중” 명기)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응시번호 문자 전송),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방문접수) 접수처: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출입문 GATE2 이용, 건물 2층)
  -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제외) 내에만 가능

## 7. 제출 서류

-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요)을 함께 첨부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필 기재</li> <li>○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혹은 전자수입인지 구매(<a href="http://www.e-revenuestamp.or.kr/">http://www.e-revenuestamp.or.kr/</a>) 후 첨부</li> <li>※ 응시수수료 미첨부 시 응시원서 접수 불가</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해당 증빙서류 제출)</li> </ul>
2. 이력서 1부 [별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과 경력(재직)증명서 상 내용 일치</li> <li>○ 경력을 일자순으로 기재</li> </ul>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4 1매 이내로 작성, 작성서식 준수</li> <li>○ 자필 서명 필수</li> </ul>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4 1매 이내로 작성, 작성서식 준수</li> <li>○ 자필 서명 필수</li> </ul>
5.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시 원본 지참</li> </ul>

구 분	내 용
6. 최종학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원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척사유 확인용으로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li> <li>○ 간호사 면허 취득 관련 학교 학력증명서 제출</li> <li>○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 포함</li> </ul> <p>※ 외국 대학·대학원의 경우 공증(한글번역본)을 같이 제출</p>
7 주민등록초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성의 경우 <b>병역관련 사항</b>이 기재되도록 발급</li> </ul>
8.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li> <li>○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 <b>정확하게 미기재하거나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b></li> <li>○ <b>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b></li> <li>○ <u>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u>  가. <b>(필수)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 확인서 중 1종과 소득금액증명서 제출</b>  나. <b>근무시간,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보완 제출</b>  다. <b>해당 내용 증명이 안될 경우 경력 불인정</b> </li> <li>○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li> </ul> <p>※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p>
9.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확인용,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해야함</li> </ul>
10. 소득금액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확인용,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해야함</li> </ul>
11. 전문간호사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자격증(보건복지부), 민간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증)</li> <li>○ 면접 시 원본 지참</li> </ul>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필 서명 필수</li> </ul>
1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필 서명 필수</li> </ul>
14.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 [별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필 서명 필수</li> </ul>
1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별지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필 서명 필수</li> </ul>
16.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별지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필 서명 필수</li> </ul>

## 8. 보수 등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의함

## 9.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 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 가능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별지10] 사용
- 응시원서에 정확한 연락처(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총무팀 (055-249-50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직무기술서(간호직(간호사))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국립마산병원	간호과	간호서기(8급)	2명

<b>주요업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간호과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 간호 관련 업무(3교대 근무)</li> <li>- 환자 및 보호자 상담·교육·치료적 간호 활동</li> <li>- 간호단위 안전관리 및 감염관리</li> <li>- 간호단위 물품,약품, 환경관리</li> <li>- 간호과 위원회 활동</li> </ul> </li> <li>○ <b>병원 내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처리 등</b></li> </ul>
-------------	---

<b>필요역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 통 역 량)</b>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li> <li>○ <b>(직급별 역량)</b>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li> <li>○ <b>(직렬별 역량)</b> 상황인식/판단력,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 능력, 전문지식, 성실성</li> </ul>
-------------	---

<b>필요지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 간호 업무에 필요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간호 및 근거 중심의 임상 실무 간호 지식</li> <li>-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지식</li> <li>- 약품관련 지식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li> </ul> </li> </ul>
-------------	---

응시 자격 요건	<b>관련분야 : 환자간호 관련 업무 등</b>	
	자격	
<b>우대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간호사 면허증 소지자</b></li> <li>○ <b>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료기관에서의 **관련 근무경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또는 종합병원</li> <li>**관련 근무경력: 「의료법」 제2조(의료인)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이며, 정규직의 근무경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근무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함.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경력의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함</li> </ul> </li> <li>○ <b>전문간호사 자격증 총 13분야 중 4분야만 인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자격증(보건복지부): 중환자전문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임상전문간호사, *감염관리전문간호사</li> <li>* 감염관리전문간호사 자격증의 경우 민간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증)도 인정</li> <li>▪ 전문간호사 자격증 2개 이상 소지하여도 1개만 인정</li> </ul> </li> </ul>

【별지 1】 (앞 면)

## 응시원서

본인은 2022년 국립마산병원 국가공무원(간호직) 경력경쟁채용 임용 시험에 응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국립마산병원장 귀하

**\* 응시원서 및 응시표는 다음 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시표

(국립마산병원 국가공무원(간호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국립마산병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및 분야: 간호서기(환자간호)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정부수입인지: 가까운 우체국에서 5천원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응시원서 뒤에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2】

## 2022년 국립마산병원 간호직 경력채용 이력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b>※ 담당자가재</b>	응시 분야	간호서기(환자간호)	성명	

나. 응시자격 등			
자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간호사 면허증	0000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다. 우대사항(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국립마산병원	0000.00.00. ~ 0000. 00. 00.	간호사	환자간호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노인전문간호사	0000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인)

**※ 작성 후 작성자 성명 및 서명(또는 날인) 꼭 확인할 것**

【별지 3】

## 자기소개서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되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1.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2. 분량은 A4용지 1매 내외로 하고, 한글(워드프로세서)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글자체: 휴면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글자색: 검정)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 . 응시자: (인 또는 서명)

※ 작성 후 작성자 성명 및 서명(또는 날인) 꼭 확인할 것

【별지 4】

직무수행 계획서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되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시험공고문에 명시된 담당예정 업무, 직무기술서와 연계하여 작성)

1. ① 본인이 임용예정직급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②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 있는 경력·실적  
③ 채용예정분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
2. 분량은 A4용지 1매 내외로 하고, 한글(워드프로세서)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글자체: 휴면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글자색: 검정)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 . 응시자: (인 또는 서명)

※ 작성 후 작성자 성명 및 서명(또는 날인) 꼭 확인할 것

【별지 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b>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b>	공무원 채용 관리	<b>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b>	<b>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b>
<b>기타 개인정보 (자격증·경력·학위)확인기관</b>	공무원 채용 관리	<b>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b>	<b>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b>
<b>인사혁신처</b>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b>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b>	<b>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보관)</b>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마산병원장 귀하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 반드시 자필로 서명(또는 날인) 후 제출





## 【별지 7】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1. 6. 30.>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마산중부경찰관서의 장 귀하

####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별지 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국립마산병원의 채용(예정)자 등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마산중부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별지 9】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개정 2019. 7. 5.>

(앞쪽)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취업(예정)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마산중부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 【별지 10】 \* 신청자에 한하여 작성 후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국립마산병원장 귀하

####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